

## 화순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

### 1. 심사경위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'97. 3. 7 화순군수  
나. 회부일자 : '97. 3. 7  
다. 상정일자 : '97. 3. 18 (제53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)

### 2. 제안설명 요지

- 가. 제안자 : 기획감사실장 이병일  
나. 제안사유  
○ 공직자 윤리법 개정에 따라 화순군관용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문중 관련 조항을 변경 정비하기 위함.  
다. 주요내용  
○ "법 제8조 11항"을 → "법 제8조 12항"으로 (안 제3조 제1항 제2호 및 제6조 제2항 제1호)  
○ "법 제8조 6항"을 → "법 제8조 7항"으로 개정 (안 제6조 제2항 제1호)

### 3. 검토보고 요지 (전문위원 민병항)

- 본 조례 개정은 공직자 윤리법 개정에 따라 화순군관용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문중 관련 조항을 변경 정비하는 것으로서 전남도의 검토안에 의거 화순군 조례규칙 심의회 의결을 거치는 등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음.

### 4. 질의답변 요지

생략

### 5. 토론요지

생략

## 6. 심사결과

원안가결

첨부 : 화순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부.

끝.

## 화순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97 - 27
------------	---------

제출년월일 : 1997. 3. 7

제 출 자 : 화 순 군 수

### 1. 제안이유

- 공직자 윤리법 개정에 따라 화순군관용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문 중 관련 조항을 변경하여 정비하고자 함.

### 2. 주요내용

- "법 제8조 11항을 → "법 제8조 12항으로 개정  
(안 제3조 제1항 제2호 및 제6조 제2항 제1호)
- "법 제8조 6항"을 → "법 제8조 7항"으로 개정  
(안 제6조 제2항 제1호)

## 화순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
화순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 제1항 제2호중 "법 제8조 제11항"을 "법 제8조 제12항"으로 한다.

제6조 제2항 제1호중 "법 제8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 및 법 제8조

제11항의"를 "법 제8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 및 법 제8조 제12

항"으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 조문 대비 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 (기능)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 결정한다.	제3조 (기능) ① - - - - - .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법 제8조 제1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승인	2. 법 제8조 제12항 - - - - - .
3. ~ 4. (생 략)	3. ~ 4. (현행과 같음)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제6조 (위원회 회의등)	제6조 (위원회 회의등)
① (생 략)	① (현행과 같음)
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다음 각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	② - - - - - .
1. 법 제8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의뢰 및 법 제8조 제1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의 승인	1. 법 제8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의뢰 및 법 제8조 제12항의 - - - .
2. ~ 4. (생 략)	2. ~ 4. (현행과 같음)
③ ~ ④ (생 략)	③ ~ ④ (현행과 같음)